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 신설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,
-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제명개정】

-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→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

【조문개정】

- 민간위탁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 개정(안 제1조, 제2조)
 -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내용 삭제

-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(안 제4조제3항)
 - 민간위탁의 남용방지 및 투명성·책임성 제고
- 근거법령 개정 :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규정(안 제8조)
 - 사무관리규정 제13조 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

【위탁사무의 삭제】 안 [별표]

-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(창조전략담당관) : 대행사업으로 시행
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(기업유치지원과) : 대행사업으로 시행
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(미래산업과) : 사업종료
-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(일자리창출과) : 개별조례에 근거

【그 밖의 개정사항】 안 [별표]

- 사무 이관
 - 인터넷방송 운영 : 정보화담당관 → 공보관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위임과 위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변경하고,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를 신설할 경우 의

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, 환경변화에 따른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과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

첫째, 조례명을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변경,

둘째, 위탁사무 신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,

셋째, [별표]의 위탁 사무 중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(창조전략담당관),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(기업유치지원과), 충북 과학기술 혁신대전(미래산업과),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(일자리창출과)를 삭제하고,

넷째, 인터넷방송운영의 담당부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안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“기존 수탁기관”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, 수탁기관이 바뀔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“기존 수탁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,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시행일이 즉시일 경우 3~4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필요한 위탁사업은 의회승인, 공고, 모집, 선정 등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 제2조(경과조치)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